

인천광역시 저수지·댐 안전관리위원회
운영 조례안

인천광역시

인천광역시 저수지·댐 안전관리위원회 운영 조례안

의안 번호	10
----------	----

제출년월일 : 2014. 7. 2 .

제 출 자 : 인천광역시장

1. 제안이유

- 가. 「저수지·댐의 안전관리 및 재해예방에 관한 법률」의 위임에 따라 인천광역시 저수지·댐 안전관리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,
- 나. 저수지·댐의 효과적인 안전관리 체계를 확립하고자 함.

2. 주요내용

- 가. 조례의 제정 목적과 위원회의 기능을 정함.(안 제1조 및 제2조)
- 나. 위원회의 구성에 관한 사항과 위원의 임기를 정함.(안 제3조)
- 다. 위원장의 직무와 위원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함.(안 제4조 및 제5조)
- 라. 위원의 제척·기피·회피, 위촉의 해제 및 위원회 간사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.(안 제6조부터 제8조까지)
- 마. 관계 행정기관 등에 대한 협조요청 및 운영세칙에 관한 사항을 정함.(안 제9조 및 제10조)

3. 참고사항

- 가. 관련법령 검토와 발췌사항
- 나.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

인천광역시 저수지·댐 안전관리위원회 운영 조례안

제1조(목적) 이 조례는 「저수지·댐의 안전관리 및 재해예방에 관한 법률」 제5조에 따라 인천광역시 저수지·댐 안전관리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
제2조(기능) 인천광역시 저수지·댐 안전관리위원회(이하 “위원회”라 한다)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·의결한다.

1. 재해위험 저수지·댐 정비기본계획에 관한 사항
2. 저수지·댐의 안전관리 등 기술증진에 관한 사항
3. 그 밖에 저수지·댐의 안전관리를 위하여 위원회의 위원장이 심의에 부치는 사항

제3조(구성 등)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11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.

② 위원장은 소방안전본부장이 되고,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.

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인천광역시장의 위촉 또는 임명한다.

1. 재난·방재 분야 및 저수지·댐 업무 관련 공무원(과장급 이상)
2. 「고등교육법」에 따른 대학에서 댐공학·하천공학·환경공학·수리·수문학·토질공학 등 관련분야에서 조교수 이상의 직에 있는 사람
3. 그 밖에 저수지·댐 안전관리와 관련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

④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, 세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. 다만,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.

제4조(위원장의 직무)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,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.

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, 위원장과 부위원장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직무를 대행한다.

제5조(운영)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, 그 의장이 된다.

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,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.

③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회의의 일시·장소 및 안건 등을 회의 개최 7일 전까지 위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. 다만, 긴급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.

제6조(위원의 제척·기피·회피) ① 위원은 심의 안건과 직접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 안건의 심의에서 제척된다.

② 해당 안건의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를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신청을 할 수 있다.

③ 위원은 제1항에 따른 제척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에서 회피하여야 한다.

제7조(위촉의 해제) 인천광역시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의 위촉을 해제할 수 있다.

1.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
2. 직무태만,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
3. 제6조제3항을 위반하여 스스로 회피하지 아니한 경우

제8조(간사 및 서기)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와 서기를 각 1명씩 둔다.

② 간사는 위원회 업무 담당사무관이 되고, 서기는 업무 담당자가 된다.

제9조(관계 행정기관 등에 대한 협조요청) 위원회는 안건의 심의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, 공공기관의 장, 그 밖의 관계인에게 자료의 제출, 의견의 진술 등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.

제10조(운영세칙) 이 조례에서 규정한 것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.

부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관련법령 검토와 발취사항

관계법령	<p>□ 「저수지·댐의 안전관리 및 재해예방에 관한 법률」</p> <p>제3조(저수지·댐관리자의 책무) 저수지·댐관리자는 관할 저수지·댐에서 발생할 수 있는 재해를 저감(低減)하기 위하여 제6조에 따른 안전관리기준을 준수하고, 저수지·댐의 안전점검·정밀안전진단·보수 및 보강 등 안전성 확보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하며, 재해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 사람의 생명 또는 신체에 대한 위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지역 안의 주민이나 해당 지역 안에 있는 자가 안전하게 대피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.</p> <p>제5조(시·도저수지·댐안전관리위원회) ① 시·도본부장 소속으로 시·도저수지·댐안전관리위원회(이하 "시·도위원회"라 한다)를 둔다.</p> <p>② 시·도위원회를 효율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실무위원회를 둘 수 있다.</p> <p>③ 시·도위원회 및 실무위원회의 구성·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.</p>
관련법규 정비대상	“해당사항 없음”
특이사항	“해당사항 없음”

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

1. 비용 발생 요인

- 조례안 제3조에 따라 인천광역시 저수지·댐 안전관리위원회를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11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여 운영
- 위원회 위원 수당 : 5,400천원
 - ※ 산출근거 : 100,000원(2시간)×9명(공무원 제외)×6회 = 5,400,000원/년

2. 미첨부 근거 규정

- 「인천광역시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」 제3조제1항제1호
 - ※ 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1억원 미만이거나 한시적인 경비로서 총 3억원 미만인 경우

3. 미첨부 사유

- 본 조례안에 따라 위원회를 구성·운영하더라도 위원 수당 외에 특별한 소요예산이 없고, 연 6회 위원회를 개최한다고 예상하더라도 위원 수당은 1억원 미만임.

4. 작성자

소방안전본부 재난관리과장 허영수